

# 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영업일 정의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한도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○	○	-	주 2)	○	-	-	-
2	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3	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-	-	○	○	10)
4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주 1)	-	○	○	10)
5	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-
6	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○	-	-	○	○	10)
7	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10)
8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10)
9	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10)
10	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-
11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2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3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-	-	-
14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-	-	-
15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6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7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8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주 1)	-	-	-	-
19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	-
20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	-
21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주 1)	-	-	-	-
22	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 4 호(채권)	-	-	-	주 1)	-	-	-	-
23	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 5 호(채권)	-	-	-	주 1)	-	-	-	-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영업일 정의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 한도	결 산	변 동 성	변경 사항
24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○	○	-
25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-	-	-
26	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 40 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주 2)	○	○	○	-
27	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-	-	주 2)	○	○	○	10)
28	미래에셋 FINEMMF1 호(국공채)	-	-	-	-	-	○	○	10)
29	미래에셋 MSCIAC 월드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○	○	10)
30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-	○	○	-
31	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투자자신탁(USD)(채권)	-	-	-	-	-	○	○	-
32	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3	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4	미래에셋배당과인컴 30 성과보수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10)
35	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10)
36	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10)
37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8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 7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39	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투자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○	○	10)
40	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41	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42	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1.5 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-	-	-	○	○	-
43	미래에셋하나 1Q 개인연금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○	○	-

## 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영업일 정의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- 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07월 14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[아래 참조1]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<u>[아래 참조 1]</u>
제37조(보수)	<신설>	<u>[아래 참조 1]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 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 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<u>[아래 참조 1]</u>

[참조1]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	환매
----	------	---------	----	----

			판매 수수료	수수료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	0.6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32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영업일 정의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 (용어의 정의)	9. 다만, 매년 1월 2일, 1월 3일, 5월 3일, 5월 4일, 5월 5일은 제 2호의 영업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<삭제>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 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]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]

	<생략> <신설>	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  
주1)

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주2)
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
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 대상	[장내파생상품]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여) 위험평가액 기준 <b>10% 초과</b> )	[장내파생상품]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통화나 주식·채권·통화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여) 위험평가액 기준 <b>40% 이하</b> )

	<p>[장외파생상품]        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)          ((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)위험평가액 기준 <b>10% 초과</b>)</p>	<p>[장외파생상품]        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다만,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.)          ((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여)위험평가액 기준 <b>40% 이하</b>)</p>
--	---	---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< 투자비용 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FINEMMF1호(국공채)	6	6	<u>0.05</u>	<u>0.14</u>
미래에셋MSCIAC월드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(UH)	<u>2</u>	<u>3</u>	<u>17.61</u>	<u>13.24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08</u>	<u>1.79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5.66</u>	<u>17.73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16</u>	<u>17.28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<u>5</u>	<u>4</u>	<u>4.37</u>	<u>5.55</u>
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42</u>	<u>5.35</u>
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투자신탁(USD)(채권)	5	5	<u>0.6</u>	<u>0.55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2.91</u>	<u>17.6</u>
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32.65</u>	<u>26.51</u>
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<u>7.63</u>	<u>5.65</u>
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4.51</u>	<u>3.63</u>
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4.51</u>	<u>3.62</u>
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투자신탁(주식)	2	2	<u>23.41</u>	<u>17.66</u>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7.93</u>	<u>19.13</u>
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4	4	<u>6.02</u>	<u>5.54</u>
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18.47</u>	<u>14.27</u>
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9.44</u>	<u>17.99</u>
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52.43</u>	<u>52.06</u>
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<u>19.74</u>	<u>14.16</u>
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62</u>	<u>19.94</u>
미래에셋인텍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43</u>	<u>17.75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2	2	<u>23.73</u>	<u>19.09</u>
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<u>33.22</u>	<u>34.8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3.73</u>	<u>4.7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4	4	<u>7.13</u>	<u>6.0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4.14</u>	<u>4.97</u>
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<u>8.29</u>	<u>6.13</u>

###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 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### 9) 법 개정사항 반영

#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 ②~③ <생략> 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 ②~③ <생략>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 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 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
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- 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<u>- 신탁업자 : 국민은행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&lt;삭제&gt;</u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 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#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